

조선후기 제주 進上物 조달과 수송*

나가모리 미쯔노부(長森美信)**

〈차 례〉

- I. 머리말
- II. 진상물의 조달
- III. 진상물의 수송
-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왕조의 국가재정을 지탱한 것은 田稅와 良役, 그리고 貢納이었다. 공납제도는 貢物과 進上의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大同法이 실시되면서 공물의 대부분은 미곡으로 대신하는 代納制가 도입된 후 공물제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공납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면서 진상은 공물과는 구별되는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진상은 지방관들이 각지방의 토산품을 禮物로 임금에게 바치는 독특한 제도로서 이념적으로는 조세적인 성격이 매우 약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동법으로 공납제가 크게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진상은 본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진상은 18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현물납을 기본으로 하였고 이 때문에 지방차원의 수탈로 이어질 여지가 매우 컸다.

제주도는 군사적·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田稅·大同 등 중앙에 납부하는 조세가 거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진상만이 중앙에 상납해야하는 유

* 이 논문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02년도 연구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일한 부담이었으며, 그 성격은 실질적으로 조세와 다름이 없었다.¹⁾

조선전기 진상에 관해서는 田川孝三의 선구적인 연구가 있다.²⁾ 그런데 田川는 조선 전 지역에 걸쳐 행해진 진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인지 특정지역, 특정시기의 進上物 품목의 차이나 수량 변화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해주는 것이 朴贊殖의 연구이다.³⁾ 박찬식은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제주지역의 진상물 품목 및 수량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여 제주지역 진상 '제도'의 輪郭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그러나 박찬식 등의 연구에 있어서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진상물을 입수하여 지방관에게 바쳤으며, 그 물건을 어떤 경로를 통해 서울까지 수송했는가 등의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해명되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조선후기 진상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표류선의 기록도 참조하면서,⁴⁾ 제주도를 예로 들어 진상물 조달의 경위와 수송경로를 밝히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진상물의 조달과 상납 문제를 매개로 하여 해상교통이라는 측면에서 조선후기 제주사회의 실태를 살펴보는

- 1) 땅이 척박한 제주는 전세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 대동법 실시 이후 大同稅가 부과되긴 했지만, 제주의 경우 토지 대신에 男丁을 대상으로 연간 田米 5 升을 거두어 들였으며, 收納額은 중앙에 상납되지 않고 모두 제주관아의 운영에 충당되었다.
- 2) 田川孝三는 진상에 대한 제도적 고증을 통해 진상의 개념을 규정했다. 田川는 자신이 규정한 진상의 개념을 토대로 각 지방의 진상품목을 분석한 후 民戶의 부담 등 진상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날카롭게 고찰했다. (田川孝三, 1965 『李朝貢納制の研究』 第二篇 進上考, 東洋文庫)
- 3) 朴贊殖, 1996 「19세기 제주지역 진상의 실태」 『耽羅文化』 16. (高昌錫 외, 1997 『19세기 濟州社會研究』 一志社 所收)
- 4) 이 글에서 표류자료라는 것은 항해 중에 조난을 당하여 다른 나라에 표류, 漂着한 배에 관한 기록을 말한다. 松浦章는 일본이나 조선에 표착한 중국의 배에 관한 기록에 의거함으로써 관찬자료에서는 밝히지 못 했던 당시의 민간교역 및 해상교통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松浦章의 일련의 연구는 다음 글에 잘 정리되어 있다. 松浦章, 1999 「中國帆船の航海記錄」 『關西大學 東西學術研究所 紀要』 32). 한편, 조선에서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 표류한 배의 기록을, 해상교통, 상품유통 등, 조선사회 연구에 이용한 것은 高東煥이 최초이다 (高東煥, 1993 「조선후기 船商活動과 浦口間 商品流通의 樣相 漂流關係記錄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14). 고동환은 외방 포구가 서로 연결되어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그리는데 표류자료를 이용했는데 진상물 수송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필자도 표류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를 포함한 전라도지역의 선상활동에 대해 논한 바가 있는데 (長森美信, 1998 「李朝後期の海上交易—全羅道地域を中心に—」 『千里山文學論集』 59). 이 글에서는 공물·진상 연구에도 표류자료가 유용함을 제시하고 싶다.

것이 이 글의 둘째 목적이다.

II. 진상물의 조달

진상물은 지방관이 왕실에 바치는 禮物이라는 성격을 지녔다. 조세와는 달리 진상물에 대한 民戶負擔의 규정은 원래 없었으며, 물건은 지방관들이 스스로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즉 각도 監司, 각 兵馬·水軍節制使가 도내 각 지방관에게 分定하여 모은 물건들을 중앙 宮闕 및各司에 상납하였던 것이다.⁵⁾ 그런데 규정이 없는 것이 오히려 관이 民戶에 대해 增額徵收하는 구실이 되어, 이것이 큰 사회적 폐단이 되었다. 조선후기에는 進上物官備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진상물로 정해진 물건들은 아주 다양했다. 제주도에 배정된 진상물은 크게 牛馬類, 海産類, 柑橘類, 藥材類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제 그 네 종류 진상물이 어떤 경위로 관에 상납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牛馬類의 조달

말은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품 중 하나이다. 고려 때 元나라가 직할 목장을 설치한 이래, 조선에서는 세종 때 한라산 산록을 중심으로 들담을 쌓고 목장지로 정하여 말을 방목시켰다. <표 1>은 제주에서 중앙에 진상된 말과 소의 종류 및 수량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⁶⁾

17세기 중엽에는 제주도 안에 목장이 11 군대(제주 7, 정의 3, 대정 1) 있었고 [所]라고 불렀다. 7개 所는 다시 [屯]이라는 작은 단위로 나뉘었는데, 천자문에서 一字씩을 뽑아서 이름을 지었다. 제주도 3읍을 통틀어 字는 58자(제주 38, 정의 17, 대정 3), 말은 1,1385필⁷⁾(제주 6450필, 정의 2383필, 대정 2552필)이 있었다. 이 목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所마다 馬監 1명을 두었는데, 그 위에 判官·현감이 겸직하는

5) 田川孝三, 앞의 책, 228~229 쪽.

6) 朴贊雍, 앞의 글, 129~137 쪽에서 작성.

7) 『耽羅誌』大靜縣 牧養條에는 “삼읍을 통틀어 말하면 말의 현재 수는 함께 1,0185 필이다” 라고 하는데, 6450(제주)+2383(정의)+2552(대정)=1,1385(제주 3읍)가 된다.

監牧官이 있었다. 또 屯마다 群頭 각 1명, 群副 각 2명, 牧子 각 4명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寺奴層에서 充定되었다. 목자에게는 원래 保⁹⁾를 두지 않았지만 李慶億의 狀啓에 의하여 보 2명을 설치하게 되었다. 營門에는 習馬 6명이 있었다. 이들은 關馬 때 進上馬를 뽑는 일, 또한 사육, 조교, 치료 등을 관장하였다.⁹⁾

〈표1〉 조선후기 進上牛馬의 종류와 수량의 추이

	17세기 중반	18세기 초	18세기 중반	19세기 전기	19세기 중반
遞任進上	牧使·判官各 3 兩縣監各 2	-	3	3	8
年例馬	8	8	8	8	8
三名日	各 20	各 20	60	60	60
歲貢馬	100	-	200	200	200
御乘馬	-	20	別御乘馬 10*	別御乘馬 20	別御乘馬 20
差備馬	-	80	60*	80	80
凶駕馬·駑駘馬	-	32/33	10/10	10/10	10/10
甲馬	-	-	200*	山屯甲馬 200	山馬 200
監牧官年例馬	-	-	2(間年封)	-	-
馬合計(頭)	178	253	379	391	391
馬裝(部)	10	-	-	紅馬裝 3 紅鞍 6, 騎鞍 10	紅馬裝 3 紅鞍 6, 騎鞍 10
祭享黑牛(首)	-	20	40	42	42

* 三年一封.

한편 민간인이 경영하는 목장은 私屯이라고 했다. 제주를 대표하는 사둔은 金萬鎰의 목장이다. 今西龍가 소개한 사본자료인 『海外聞見錄』에 의하면, 명나라 萬曆 연간(1573~1319), 金萬鎰이라는 인물이 一代로 대목장을 만들어 良馬를 牧養하고 많은 御乘馬를 獻上하였다고 한다.¹⁰⁾ 김만일은 1천여 필이나 되는 말들을 헌상한

8) 保人이라고도 한다. 원래 役을 가지지 않은 壯丁에게 부과한 國역으로서 甲士·正兵 등 軍역이 부과된 자의 농지를 경작하는 일 등에 종사했다. 이것이 牧子役에도 전용되었다고 생각된다.

9) 『耽羅誌』 濟州 馬場條 및 牧養條, 大靜 牧養條, 旌義 牧養條.

10) 왕이 騎乘하는 御乘馬는 보통 別進上으로 상납되었다. 조선후기를 거치며 金萬鎰 목장의 양마가 어승마로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가 되었던 것 같다. 1797년 제주목사 柳師模가 체임진상으로 헌상한 말이 어승마가 되었는데 이것은 유례 없는 일이라 해서 유사모는 논상되었다.(『承政院日記』 第1780冊, 正祖21年丁巳 8月 初2日戊戌條)

공적으로 관직이 知中樞府事(정2품)에 이르렀으며, 그 자손들은 監牧官을 세습하고 수령이나 嘉靖大夫(중2품) 등을 역임하여 그 가문이 번성했다.¹¹⁾

김만일은 旌義의 부유한 백성으로 10 所場 안에 사둔을 만들어 말을 길렀다. 그 사둔의 말은 수천 필을 넘었으며, 國屯의 3~4배 이상이 되었다. 1620(광해군 12)에는 만일이 서울에 올라가 말 500여 필을 바친 공적으로 獻馬功臣, 五衛都摠府副摠管(從2品)에 除授되었다.¹²⁾ 섬의 백성에게 堂上 실직을 제수함에 대해 사헌부 및 사간원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광해군은 김만일의 장남인 大鳴을 수령, 차남인 大聲을 당상, 손자 礪를 전라도 邊將에 제수하는 등 김만일의 자손들에게도 후하게 시상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은 같은 해 11월에 知事(知中樞府事)직을 그만두고 제주에 내려가기를 청했으며, 12월에 하직하여 제주에 내려갔다. 그 때 손자는 宣傳官에 제수되었다.

이후에도 김만일은 1624(인조 2)년 이후 인조 6년에 이르기까지 240 필의 말을 헌납했는데, 특히 인조 5년에는 그의 말 400~500 필이 戰馬로서 취용되었다.¹³⁾ 또 1658(효종 9)에는 차남인 大吉과 礪가 戰馬 208 필을 바치는 등 김만일 목장에서 많은 말들이 국가에 헌납되었다. 또한 수령이 遞任할 때의 進上馬도 김만일 목장에서 취용되었다. 김만일의 말이 모자랄 경우에는 民戶에서 징수되었다.¹⁴⁾ 1658(효종 9) 조정은 제주목사 李檜의 건의에 따라 김만일의 목장을 [山場]으로 만들고 김대길을 監牧官으로 임명하여 김만일의 목장을 국가의 관리 하에 두었다.¹⁵⁾

國營 11 所場의 감목관은 일반적으로 제주 판관이 겸임했는데, 김만일의 목장을 전신으로 하는 山場의 감목관은 김만일의 자손들이 세습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자손들 가운데 더러 不肖한 자가 있어 牧卒을 가혹하게 부리는 바람에 원고를 초래하여 司僕寺에 呈訴하기에 이르니 조정은 김만일 자손의 감목관직 세습의 관행을 폐지하고 정의현감이 감목관을 겸임하게 하였다. 그러나 1719(숙종 45)년에

11) 今西龍, 앞의 책, 361~362 쪽.

12) 『光海君日記』卷50, 4年 2月 癸酉, 太白山本: 卷155, 12年 8月 庚寅條.

13) 『仁祖實錄』卷16, 5年 6月 庚申條: 卷19, 6年 8月 己亥條.

14) 李健 『濟州風土記』

15) 牧使李檜啓設山馬監牧官, 初宜廟庚子, 旌義人金萬鎰【具先慶州】以私畜蕃息獻馬五百匹, 養牧于東西別牧場【在十場內】, 以功賞萬鎰五衛都摠管, 至是其子大吉及孫礪二人又獻馬二百八頭, 放牧于山場, 於是李檜啓請以大吉爲監牧官, 自上特命其子孫世襲其職事, 厥後馬匹蕃息, 十年間達於千餘首, 每三年必納二百匹. (『耽羅紀年』卷之二, 孝宗九年條) 「山場」은 「山屯」이라고도 불렀다. 【 】안의 내용은 원문의 割註이다.

김만일의 자손인 金世華가 서울에 올라가 擊錚하니 다시 산둔 감목관의 세습이 허락되었고,¹⁶⁾ 이후 김만일의 자손들이 계속 세습으로 산둔의 감목관을 맡은 것 같다.¹⁷⁾

목장의 최소단위인 字를 맡은 목자가 過酷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은 李健 『濟州風土記』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一屯의 말은 100 필을 넘는데 牧子는 불과 2, 3명뿐이다. 목자는 말이 죽으면 그 가축을 벗기고 관에 납입해야 한다. 관은 말의 특징에 대해 기록한 馬籍과 그 가축을 대조하여 털빛이 일치하지 않거나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 가축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同色馬라고 하여 다른 말을 牧子에게서 징수한다. 목자가 동색마를 살 때는 논밭으로부터 家財道具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팔게 된다. 말이 몇 필이 죽어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 할 경우에 官家は 목자의 친족들에게서 徵納한다. 목자의 일족 중에는 그 징수를 감당할 수 없어 친족인 목자를 죽이는 자까지 있다. 그만큼 이 역은 곤란하기 때문에 한번 목자로 정해지면 모두 家産을 蕩盡한다고 한다. 監牧官은 대체로 判官이 겸임하는데 나라의 말에 결함이 있으면 조정에서 자신을 처벌하기 때문에 말이 죽으면 바로 다른 말을 징수하여 중앙에 상납하려고 하는 것이다.¹⁸⁾

이렇듯 말의 牧養을 맡은 牧子는 곤란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사람은 목자뿐만이 아니었다. 관영목장에서 조달하지 못한 진상마는 일반민호에서 부담했던 것이다. 진상마의 조달은 강제적인 것이었다. 分定된 진상마를 상납하지 못하면 배정된 민호의 처들은 감옥에 갇히고 그 자식들은 杖罰에 처해졌다. 또한 貪吏들은 진상을 빙자하여 사적으로 말을 징발하였다. 駿馬는 모두 3읍(제주·정의·대정)의 관리들이 다투어 빼앗아버렸기 때문에 良馬 절멸을 우려한 김만일은 준마의 눈을 멀게 하고 가축과 귀를 벗김으로써 관리들의 눈을 속여 좋은 種馬를 확보했다고 한다.¹⁹⁾ 이처럼 진상마의 조달 단계에서 탐리들의 횡폭, 가렴주구가 그치지 않아 전 도민들에게 큰 폐해가 되었던 것이다.

16) 『肅宗實錄』卷64, 45年 10月 丙辰條.

17) 1782년(정조 6)에도 세습이 폐지될 뻔했는데, 이 때에는 계속 세습케 하라는 왕명이 내려졌다. (『承政院日記』第1501冊, 正祖 6年壬寅 正月 14日辛亥條)

18) 李健, 『濟州風土記』.

1754(영조 30) 진상용 말을 잃어서 판관 朴昌鳳이 처벌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三十年【清乾隆十九年】判官朴昌鳳, 以貢馬故失 逮去. (『耽羅紀年』卷之3, 英祖30年條)

19) 李健 『濟州風土記』

한편, 소는 魚燈浦에 설치된 「牛屯」에서 사육되었다. 여기서 사육된 소들은 黑牛가 적고 雜色牛(황소나 얼룩소)가 많았다. 祭享용으로는 순수한 黑牛 15마리, 얼마 후에는 20마리가 매년 封進되었는데 牛屯에서 바치는 소만으로는 부족해서 민간의 소가 징발되었다.²⁰⁾ 조정은 1750년, 加波島에 黑牛場을 설치하여 50마리의 소를 방목함으로써 진공에 대비시켰다.²¹⁾ 그리고 진상용 흑우의 수량은 18세기 말에 40마리, 19세기에는 42마리로 그 수요가 대폭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가파도의 새 흑우장 설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말의 경우와 같이 소도 民戶에서 징발되었다. 金尙憲은, 지금 민가의 소와 말은 옛날의 십분의 일, 이에 지나지 않는다. 축산의 성쇠는 진상의 運에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리들의 貪汚清廉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²²⁾ 말에 비하면 封進되는 수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흑우는 稀貴種이었기 때문에 민간의 부담은 결코 적지 않았다.

이외에 三邑의 수령의 체임진상으로 정해지고 있던 馬裝은 紗羅峰 남쪽에 설치한 羊棧에서 정비되었다.²³⁾

2) 海産類의 조달

제주에서 진상된 해산류의 대표는 전복이다. 전복의 채취는 鮑作이라고 불린 사 람들에게 부과되었다. 『탐라지』에는 포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鮑作은 수영하며 물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 남자는 적고 여자가 많다. 풍습이 수영하는 여자를 첩으로 삼는 것을 能事로 하고 세력에 의지하는 자는 官役을 면제받는다. 자식이 없는 사람과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만 進上의 役에 동원되니 편중된 괴로움이 매우 심하다.²⁴⁾

20) 『耽羅誌』 濟州 牧養條.

21) 『耽羅紀年』 卷之3, 英祖26年條.

22) 金尙憲 『南槎錄』 卷之1, 9月 22日丙申條. 淸陰 金尙憲은 成均館 典籍으로 있던 1601년(선조 34)에 吉雲節의 제주반란 음모사건의 撫慰를 위해 御使로 제주에 파견되었다. 그는 8월13일에 출발하여 이듬해 2월 15일에 入關 復命했다. 『南槎錄』은 그 때 김상헌이 見聞한 것. 吟詠, 제주도의 풍토·物産·形勝·民情·風俗·古蹟·貢獻·城池·港口·軍備·弊瘼 등을 기록한 것이다.

23) 『耽羅誌』 濟州 牧養條.

24) 『耽羅誌』 濟州 工匠條.

즉, 鮑作에는 여자가 많은데, 이들은 수영하며 해산물을 채취하였다. 이것은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제주해녀를 상상하게 한다. 이들 중 權勢家에게 빌붙지 못하는 일생을 진상용 전복 채취에 바쳤으며 그 일은 매우 고된 작업이었다. 규정에 따르면 정의·대정 2읍에 대해서도 포작 13명씩을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濟州兵馬水軍節制使 즉, 목사가 진상용 해산물 채취를 2읍에도 分定하였음을 시사한다.²⁵⁾

鮑作은 浦作이라고 했다. 金尙憲은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 제주도에서도 처가 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사는 浦作들이 많았다고 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주에서 바쳐야 할 전복의 수가 극히 많고, 관리들이 공을 빙자하여 私利를 영위하는 것이 또한 몇 배나 된다. 浦作들이 그 役을 견디지 못하여 흩어져 떠돌다가 물에 빠져 죽어 열 중에 두 셋 만이 남게 되었는데도 필요하다고 거두어들이는 물건은 옛날보다 줄지 않았다. 이에 자신은 오래도록 물질을 하게 되고 그 처는 오래도록 감옥에 갇히게 되니 冤恨을 품고 괴로움을 견디는 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이웃에 과부가 있어도 오히려 거지노릇을 하다가 죽기를 바랄지언정 浦作의 아내가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²⁶⁾

濟州官에서 바치는 전복의 수요는 극히 많았다. 더군다나 관리들이 공을 청탁하여 사리를 피함에 따라 바쳐야 하는 수량이 또한 몇 배나 된다. 포작이 그 역을 감당하지 못 해서 유망하고 익사하는 자가 10 중 2, 3이나 되었지만, 徵斂供應은 예전보다 줄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포작은 거의 바다 안에서 생활하다시피 하고 그 처는 오래도록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비록 이웃집에 寡婦가 살고 있더라도 포작의 처가 되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걸식으로 죽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다.

〈표2〉는 진상용 해산류의 품목과 수량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²⁷⁾ 이 표에 보이는 규정이외에도 수시로 부과되는 別進上용의 전복, 그리고 貪吏들이 사적으로 징

25) 『耽羅誌』 旌義 貢獻條: 大靜 貢獻條.

26) 本州所賣鮫魚之數極廣, 官吏之憑公營私, 又且倍從, 浦作輩, 不堪其役, 流亡溺死, 十存二三, 而徵斂供應 不減於舊, 以此其身則長在海中, 其妻則長在獄中, 含冤耐苦之狀, 不可勝言, 故雖有隣居, 寡婦, 寧願乞食自終, 不欲爲浦作人妻也. (金尙憲 『南槎錄』 卷之1, 9月 22日丙辰條)

27) 朴贊植, 앞의 논문, 129~137 쪽에서 작성했음.

수하는 전복도 포작들이 채취해야 하였다. 수령을 비롯한 지방관리들은 진상제도를 사리추구의 도구로 이용하고 그 징수량은 국가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증대되었다. 전복 채취의 역은 포작뿐만 아니라 점차 일반민호에도 부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섬 전체의 物力을 모조리 빼앗아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다.²⁸⁾

〈표 2〉 조선후기 진상 해산류의 품목과 수량

	17세기 초	17세기 중반	18세기 초	18세기 말	19세기 초	19세기 중반
槌鮑(貼)	3030	4918	3900 여	1423	1347	1630
條鮑(貼)	230	265	260 여	113	107	131
引鮑(貼)	910	1115	1100 여	354	377	377
烏賊魚(貼)	680	1075	860 여	364	349	414

貼은 전복 100 개를 한 단위로 이르는 말임.

〈표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진상용 해산류의 수량은 18세기에 격감되었다. 田川孝三은 진상물이 量減되거나 품목이 개정되는 일은 쉽게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²⁹⁾ 그러나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서 진상물이 양감되거나 봉진이 정지되었다. 1716년(숙종 42) 5월, 숙종은 매년 전복을 封進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제주 別遣御史 黃龜河의 狀啓에 따라 제주에서 진상되는 전체 품목의 3분의 2를 줄이라고 명하였다.³⁰⁾

〈표 2〉에 보이는 수량의 격감은 당시 왕명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선 건국 당초에는 진상물 관비의 원칙이 있었고 1425년(세종 7)의 규정에 따라서 연해 여러 읍에서 進上物購은 수군을 사역해서 채취되고 정비되었다. 수군

28) 本州貢案. 每年別進上, 槌鮑三千三十貼, 條鮑二百五十貼, 引鮑九百十注之, 烏賊魚六百八十貼 (중략) 此皆取辦於三邑浦作, 而其他海菜, 及守令封送之數, 不在此限. 一島物力, 殆盡此矣 (金尙憲 『南槎錄』 卷之1, 9月 22日丙申條)

29) 田川孝三, 앞의 책, 218~222 쪽.

30) 『承政院日記』 第495冊, 肅宗 42年丙申 5月 初10日己巳條. 이밖에도 18세기 초부터 100년 동안에 확인된 것만으로 8 번의 量減 및 진상 정지가 확인된다. 영조대에는 주로 三名日進上이 蠲減 아니면 다음해까지 정지되었다(『英祖實錄』 卷102, 39年 12月 甲辰條: 卷104, 40年 11月 丙辰條: 卷109, 43年 12月 丁卯條: 卷117, 44年 5月 丙午條, 47年 11月 丙寅條). 전복 量減에 대해서는 『英祖實錄』 卷119, 48年 10月 己卯條: 『正祖實錄』 卷18, 8年 11月 庚申條: 卷31, 14年 10月 辛酉條에 각각 관련 기사가 보인다. 量減의 이유는 그 대부분이 흉년에 따른 것으로 鮑作들의 과중한 부담을 輕減시키기 위해서 量減이 실시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 하였다. 또 量減, 停止가 둘 다 왕명에 의해서만 실시되었다는 점은 田川孝三가 지적한 대로이다.

사역은 1456년(세조 2)에 금지되어 人吏로 구성된 進上物膳軍을 새로 정했다고 한다. 이것은 定役戶³¹⁾로 다른 役은 면제되었다. 이와 같이 진상물은 원칙적으로 관부에서 정비하고 또한 上番軍吏·정역호로 하여금 정비, 상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반드시 그렇지 않아 일반민호에도 그 부담이 전가되었다.³²⁾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1699년(숙종 25) 2월 15일, 제주의 海夫 俞順男 등은 진상용 粉蠶를 채취하기 위해서 배 한 척을 타고 정의 代叱浦로 향했다. 이 배의 승무원 13명 중 무려 10명이 여자였다. 이들은 그 날 중에 대질포에 도착하여 약 2개월 동안 그 곳에 머무르면서 미역을 채취했다. 미역을 배에 실은 후 여자 9명은 육로로 제주에 돌아가고 사공 유순남과 격군인 남자 2명, 여자 1명이 4월 28일, 배로 귀로에 올랐다.³³⁾

이들은 모두 「水業資生」의 海夫로 확인된 직역은 寺奴와 良女이다. 이들이 정역호인 鮑作이었다면 양녀라는 직역은 나올 수가 없다. 즉 포작으로 정해진 이외에 일반민호에게도 진상물을 채취하는 역이 부과되었던 것이다.

전라도 연해에서 수상생활을 하면서 어로활동에 종사한 「鮑作干」은 원래 제주도에서 逃散한 자들이라고 한다.³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납용 전복 채취를 생업으로 삼는 포작들의 부담은 과중하였기 때문에 남자는 장가들 수도 없는 정도였다. 이 포작들이 도망쳐서 육지 연안으로 건너가 포작간의 전신이 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많은 포작들이 육지로 도망한 것이 전복 채취의 부담을 일반민호에게 전가하게 된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다른 지역의 사례이지만 진상물 조달의 양상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례 A》

珍島의 사공 金親乞 등 19명은 1714년(숙종 40) 2월 2일, 楸子島에 진상용 生蠶를 채취하러 갔다. 승무원 19명 중 2명은 아이였고 그 어머니 2명을 포함한 4명이 여자,

31) 定屬戶라고도 한다. 국정 운영의 필요상, 예속관계 아래서 世職世業의 경영을 강요받은 民戶로 대부분은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身役으로 정해진 직무·생산노무에 종사했다. 田川孝三, 앞의 책, 第1篇 李朝貢物考, 71~73 쪽 참조.

32) 田川孝三, 앞의 책, 234~235 쪽.

33) 『漂人領來謄錄』 第6冊, 癸卯(1699) 9月 初8日條.

34) 田川孝三, 앞의 책, 235~236 쪽. 田川孝三는 鮑作干은 땅이 메마르고 산업도 성하지 못하는 제주도에서 전라·경상도로 도망해서 漁撈활동을 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供應 許琮의 말을 소개하고 있다.

남자는 15명이었다. 확인되는 직역은 良人, 良女가 11명, 나머지 3명은 私奴였다.³⁵⁾

《사례 B》>1732년(영조 8) 12월 5일, 靈巖 梨津의 사공 文斗應哲 등 11명은 正月 朔 進上物 미역·김(海衣)·전복·생복을 구하기 위해 관에서 쌀 7석과 錢 30냥을 지급 받고 所安島에서 추자도로 가서 進上물을 구입했다. 격군 중에는 閑良, 正兵, 良人 등 직역이 보인다.³⁶⁾

《사례 A》는 進上물을 채취한 예, 《사례 B》는 進上물을 구입한 예이다. 《사례 A》는 양인 양녀가 進上물 입수에 사역된 사실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鮑人」이라고 자칭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다른 良役に 더하여 進上물 조달이 부과되었던 것일까?

1690년(숙종 17)에 곡물교역을 위해 진도에서 추자도로 건너간 배에는 「進上鮑人 金武寶」가 타고 있었다.³⁷⁾ 김무보는 포인이면서 사적인 곡물교역에 종사했었다. 포인은 進上물 조달업무에 종사함과 동시에 평소에는 사적인 상업활동을 하거나 어로활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생각된다.

《사례 B》에서 승무원 중 1명이 「進上軍 私奴 文汝位」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모순을 보여준다. 말할 것도 없이 私奴는 개인이 소유한 奴인데 私인에게 소유되어 그 주인인 上典에 대한 身役이나 身貢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들은 官役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文汝位의 경우, 私奴이면서도 進上이라는 공역에 종사한 것이 된다. 그가 상전에 대해 身役 혹은 身貢이라는 私奴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進上물 조달에 관계했는지, 아니면 그의 상전이 지방관에게 進上물을 상납하는 역을 부과 받은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그리고 격군 중 朴震弼의 직역은 한량으로 한량 직역에 있던 사람이 이 배를 탔던 것은 進上물 조달의 역이 상당히 많은 일반민호에게 부과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³⁸⁾

35) 『漂人領來曆錄』 第11冊, 甲午(1714) 5月 16日條

36) 『漂人領來曆錄』 第16冊, 癸丑(1733) 9月 14日條

37) 『漂人領來曆錄』 第4冊, 辛未(1691) 2月 14日條

38) 閑良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李俊九는, 조선후기의 한량은 양역을 면제받는 자가 많고 武料를 거치지 않고도 薦擧를 통해서 出仕할 수 있었고 계다가 종5품 판관까지라는 한정은 있었지만 중앙 관리도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양반·상민의 중간에 위치한 직역이라고 하고 있다. (李俊九, 1993 『朝鮮後期 身分職役變動 研究』 一潮閣, 第4章, 특히 111~114 쪽 참조.)

해산류 등에 관해서는 진상물이 현지에서 채취되는 경우와 현지에서 조달하지 못 하여 다른 지역에서 구입되는 경우가 있었다. 어느 방법이든 進上物官備의 원칙은 무너지고 많은 일반민호들이 이 역에 동원되었다. 田川孝三은 일찍이 진상제도가 교환거래를 촉진하여 물건의 상품화를 촉진했음을 강조했다.³⁹⁾ 실제로 <사례 B>에서 보이듯이 쌀과 錢이 미역 등과 교환되고 있었던 것이다. 진상물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토산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곳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례 B>는 진상을 부과 받은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다른 지역에서 구하기 위해 광범위한 교역을 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柑橘類의 조달

제주도에 果園이 설치된 것은 1526년(중종 21)의 일로, 목사 李壽童이 進獻을 위해 5개 防護所에 각각 과원을 설치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 과원은 점차 늘어나 新增 『輿地勝覽』에는 제주에 19개소, 정의에 5개소, 大靜에 6개소로 기록되어 있으며, 『담라지』에는 여기에 제주 3개소, 정의 2 개소를 더한 합계 35개소가 기록되어 있다.⁴⁰⁾ 이밖에도 私果園이 있었지만 진상용 감귤류는 35개소의 公果園에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정조대 초기에는 공과원의 감귤이 부족하여 사과원의 감귤까지 봉진되게 되었다.⁴¹⁾ 그 원인은 과원 관리를 담당하던 果直(果園直)들이 避役, 도망한 데에 있었다.

원래 징발된 민호인 과직은 進獻을 위한 定役戶로서 과원 관리에 종사하였다.⁴²⁾ 이들은 항상 규정된 상납량 이상으로 감귤을 징수 당하고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폐단에 괴로워하여 섬 밖으로 도망했다. 이 때문에 공과원의 감귤이 부족하게 되어 사과원의 감귤이 징수되게 되었던 것이다. 감귤류의 상납 품목 및 수량의 추이에 대해서는 <표3>으로 정리했다.⁴³⁾

39) 田川孝三, 앞의 책, 247 쪽.

40) 『耽羅誌』 濟州 果園 果園總說條.

41) 朴贊植, 앞의 논문, 136~137 쪽.

42) 李健 『濟州風土記』

43) 朴贊植, 앞의 논문, 129~137 쪽에서 작성했음.

〈표3〉 조선후기 진상 감귤류의 품목 및 수량의 추이

	17세기 초	17세기 중반	18세기 초	18세기 말	19세기 초	19세기 중반
柚子(箇)	1595	-	1460	1710	1440	1640
柑子(箇)	3,1525	6,3680	2,5842	3,1253	2,8341	3,4962
金橘(箇)	3420	2680	900	-	-	-
乳柑(箇)	4290	5000	4785	2646	2762	2389
洞庭橘(箇)	6490	5060	2804	2838	2954	2698
山橘(箇)	1040	760	828	700	580	690
靑橘(箇)	3330	1250	876	780	816	859
唐金橘(箇)	-	-	678	1667	1699	1778

柑子の 수량은 17세기 중반에 배로 늘어난 후, 18세기 초에 다시 반감되었다. 또한 18세기 초에 나타난 唐金橘은 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보이지 않는다. 『南槎錄』에는 17세기 초의 진상용 감귤의 수량이 제시된 후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進貢하는 수가 이렇게 廣大한데 結實이 부족했을 때에는 매년 7, 8월에 牧使 軍官이 村家를 순시하며 橘柚가 있는 곳에서 芣으로 하나씩 표시를 하고 장부에 기록하여 가을이 되어 곁이 익는 날에 장부와 대조하여 收納한다. 바람과 비에 손상을 입었거나 까마귀나 참새가 쪼아먹은 것이 있으면 집주인에게서 그 나머지를 징수한다. 그렇게 못할 때에는 장부대로 바치도록 한다. 때문에 民家에서는 감귤을 毒藥과 같이 보고, 재배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나무가 있는 자는 그 나무를 잘라버려 官家에서 문책을 받는 걱정을 없애려 하는 자가 많다고 한다.⁴⁴⁾

원래 정해진 封進 수량이 많았는데, 흉작 때에는 매년 7, 8월에 목사의 군관이 마을을 순시해서 橘柚가 있는 곳에서는 芣으로 하나씩 표시를 하고 장부에 기록하여, 감귤이 익는 가을에 장부와 대조하여 수납한다. 바람과 비 때문에 상하거나 까마귀나 참새의 해를 당하여 장부대로 징수하지 못 하면, 집 주인에게서 그 분량을 징수하였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감귤 재배를 꺼리게 되었으며 감귤나무가

44) 進貢之數如此其廣大, 而或所結實數不足之時, 每歲七八月, 牧使軍官巡視村家, 有橘柚處, 以筆箇箇榜點而記簿, 至秋橘柚熟之日, 按簿考納, 或被風雨所損, 烏雀所殘, 則徵其餘於家主, 如不得應徵, 依簿隨之, 以此民家視橘柚猶毒藥, 不宜培植, 有樹者亦多斫去, 以免官家侵貢之患云. (金尙憲 『南槎錄』 卷之3, 10月 23日 丁亥條)

있더라도 이 나무를 잘라버리는 자가 많았다고 한다. 이 기사는 감귤류에서도 食
吏들이 규정 수량을 무시하여 빈번히 징수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공과원만으로는
진상용 감귤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사과원에 대한 징수가 심해져서 커다란 폐
해가 되었던 것이다.

4) 藥材類의 조달

조선에서는 세종 때 이래, 각 지방관에 醫院을 설치하고 教諭·醫生을 두어 의약
에 관한 일을 맡기고 官奴를 배속시키고 약재 채취에 종사시킴과 동시에 약재 재
배를 위한 苑圃를 설치하였다. 약재의 채취·조합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했기 때
문에 父子傳承으로 생업으로 삼게 했다. 즉 원칙적으로는 관원과 정역호로 하여금
약재를 채취하도록 하여 일반민호에는 부담이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⁴⁵⁾

제주의 경우 邑城 안에 약국을 설치하여 監官 2명을 두고 藥圃를 설치하여 여
러 가지 약재를 재배하면서 매월 산과 들, 바다와 강에서도 채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생 14명, 약한 20명을 정하였는데 이 약한이야말로 세습적으로 진
상용 약재의 採納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⁴⁶⁾ 일반적으로 의생은 의원에 소
속되어 의술에 익숙하여 질병 치료에 종사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의 직무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醫生인 寺奴 文萬柱는 1723년(경종 3) 4월 제주에서 都會官인 康津으로 진상물
을 운반하는 배에 올랐다. 그는 제주에서 사용하는 약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강진
까지 가는 배에 올랐던 것이다.⁴⁷⁾ 이렇듯 의생은 제주도 안에서 自給되지 못 하는
약재들을 다른 지역에서 구하는 임무에도 동원되었다. 제주도 안에서 사용되는 약
재와 같이 진상되는 약재는 약포에서 재배되는 한편 藥漢들에 의해 採納되고, 또
의생들에 의한 교역으로 조달되었던 것이다. 약재에 관해서는 민호에 대한 徵斂의
폐해를 논의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 하였다. 이것은 약재의 채취에는 전문적 지식
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45) 田川孝三, 앞의 책, 65 쪽.

46) 『耽羅誌』 濟州 醫藥條.

47) 『漂人領來曆錄』 第13冊, 癸卯(1723) 10月 11日條: 같은 해 9月 29日條.

Ⅲ. 진상물의 수송

이 절에서는 진상물이 생산지에서 제주목 관아에 상납된 다음에 어떤 경로로 서울까지 수송되어 상납되었는가를 살펴보겠다.

田川孝三은 진상물이 왕실까지 납입되는 과정을, ①官備·定役戶에 의한 供上·民戶의 부담, ②지방관, ③감사·절제사, ④宮闈·各司 라는 순서로 정리하였다. 각 도에서 監營·內廂 혹은 도회관에 상납된 진상물을 이와 같은 관에서 통합하여 중앙에 封進하였다고 한다.⁴⁸⁾ 이 도식을 제주에 적용할 경우, 진상물은 제주관 → 도회관⁴⁹⁾(강진·영암·해남) 전라도 감사 궁궐·각사 라는 경로로 封進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를 통해 제주도는 행정상 전라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주에서 서울까지의 진상은 제주 兵馬水軍節制使, 즉 목사가 책임지고 담당했다. 바꿔 말하면 진상제도상 제주는 전라도에서 독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에서 진상물은 어떻게 조달, 집적되고 어떻게 서울까지 수송된 것일까?

진상물의 생산, 조달단계에 관해서는 부족하나마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림 1>과 <그림 2>는 『耽羅巡歷圖』의 貢馬 및 貢橘 封進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제주 각지에서 생산된 진상물은 일단 제주목 관아에 집적되었다. 여기서 제주목사의 감독하에 진상 상납의 날짜에 맞추어서 監封이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후기, 제주도의 진상물은 제도상은 체계적으로 封進되었다. 우선 매년 한번 冬至와 正朝에는 말과 結弓獐皮 등이 봉진되고 2월부터 9월까지의 해산물과 약재

48) 田川孝三, 앞의 책, 261 쪽.

49) 제주도의 경우, 강진·영암·해남의 3읍이 윤번으로 都會官을 담당하였다. 高昌錫, 「19세기 제주인의 표류실태」에 의하면 이 3읍에서는 매년 윤번을 정해서 新舊迎送의 支待, 月令進上의 운송 및 公牒의 왕래를 담당하고 상인이 제주도에 들어갈 때에는 도회관의 공문이 있어야 했다고 한다. 고창석 외, 앞의 책, 215 쪽. 六反田豊는 고창석의 설명을 수용하고 도회관이 상업 목적의 제주도 도항자를 관리하는 기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六反田豊, 1999 「十九世紀濟州島民의海難と漂流」 『年報朝鮮學』 7, 九州大學). 1454년에는 『실록』에 도회관 관련 기사가 보여, 적어도 15세기 이전부터 여러 역할을 가진 도회가 전국 각지에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端宗實錄』 卷1, 卽位年 7月 甲辰條).



〈그림 1〉『耽羅巡歷圖』貢馬封進 (部分)
제주도 내 각 목장에서 징발된 진상용 말을
제주목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이 그
려져 있다.



〈그림 2〉『耽羅巡歷圖』柑橋封進 (部分)
望景樓 앞뜰에서 글을 상자에 넣어 封하는 과
정. 제주목사가 延曦閣에서 그것을 직접 감독
하는 모습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가 주로 봉진되었다. 또한 10월부터 11월에는 감귤류를 20운으로 나누어 봉진하고 12월에는 歲抄 진상 명목으로 주로 약재가 봉진되었다. 그리고 3읍 수령의 到任과 遞任 시에는 말과 白蠟 등이 봉진되었다.⁵⁰⁾

이러한 규정 이외에는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고 진상선의 운항 실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 없다. 이것은 자료적인 한계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례, 즉 봉진 도중 조난을 당하여 일본에 표착한 진상선의 기록을 중심으로 진상물 해상수송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704년(숙종 30) 제주목사 宋廷奎의 장계에 따르면 제주에서 봉진하는 유자 진상 및 감귤 진상의 초운부터 16운과 冬至陳賀箋文, 방물, 그리고 이 해 가을의 褒貶文書 등을 監封하여 나누어 실은 4척의 배가 12월 18일, 동시에 제주를 출항했다. 그 때 4운 5운을 실은 진상선이 조난당하여 튼튼한 배에 바꾸어 실어서 다시 출항하기로 했는데 바람 상태가 좋지 않아 순풍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初運부터 16 운까지 배들을 동시에 출발시킨 것은 진상기한이 육박했기 때문이었다. 17운 18운 및 19운 20운의 진상도 감봉한 후, 바람을 기다리는 상태였다.⁵¹⁾ 이와 같

50) 朴贊禧, 앞의 논문, 131~133 쪽.

51) 『漂人領來曆錄』 第9冊, 乙酉(1705) 4月 14日條.

이 순풍을 얻지 못 하여 사전에 정해진 진상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감귤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봉진하게 되어 있었는데, 초운 진상선이 11월 중순에 출범했다는 것은 규정보다 한 달 정도 늦은 것이었다. 이 때문에 진상의 최고 책임자인 목사 송정규가 진상선의 조난 및 봉진의 지체를 보고하는 장계를 상주한 것이다. 또한 진상물을 배에 실을 때에는 규정대로 목사가 감사, 봉인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상선이 조난한 경우 같은 수량의 진상물을 다시 한번 봉진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때로는 조난한 진상선에 실은 물건의 봉진이 왕의 재결에 의해 면제된 적도 있었다.⁵²⁾

1) 進上船의 항해 사례

다음으로 표류자료 중, 진상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비교적 기술이 상세한 사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⁵³⁾ 공납·진상물을 수송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건조된 배가 진상선이다.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덕판배는 이 진상선을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진상선이라고 해도 그 항해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림 3〉 국립제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덕판배

52) 1768년, 제주의 진상선이 조난, 침몰하여 승무원 1명이 숨졌다. 그것을 들은 왕은 삼촌(三寸)의 감귤을 봐도 못 먹겠다고 해서 제주목에 별도로 賑恤하기를 명령하고 다시 봉진함을 卹減하였다. (『承政院日記』 第1287冊, 英祖44年戊子 12月 22日丙子條)

53) 표류한 제주 진상선의 사례는 많다. 예를 들어 1689년 진상용 말을 실은 배가 安南國에 표류한 후, 중국 浙江 배의 구조를 받고 귀환했고 (『肅宗實錄』 卷20, 15年 2月 辛亥條). 1778년에는 종묘에 薦新할 靑橘을 실은 배가 중국 蘇州에 漂着한 후 송환되었다. (『正祖實錄』 卷6, 2年 8月 壬戌條). 『濟州啓錄』에도 19세기의 진상선 표류 사례가 몇 건 확인된다. 표류 조선선의 기록을 가장 많이 망라적으로 소개한 것이 池內敏의 연구이다. (池內敏, 1998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표류자료를 취급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그 대부분이 출신지를 詐稱한 것으로 알려져 있듯이(池內敏, 1995 『近世朝鮮人の對日認識論ノート』 『歴史學研究』 678, 앞의 책 所收: 高昌錫, 「19세기 제주인의 표류실태」, 고창석 외, 앞의 책 所收: 六反田豊, 앞의 글), 일본이나 중국 측에서의 조사기록은 정확하다고 말할 순 없다. 수많은 표류자료 중 표류선의 항해 과정을 상세히 전해주고 신뢰도가 높은 것은 『漂人領來曆錄』과 『備邊司曆錄』의 기록이다.

단순히 정해진 진상물만을 운반하는 배는 오히려 드물었다.

〈사례 1〉

1651년(효종 2) 10월 6일, 제주의 船主 寺奴 石天 등 11명은 진상물을 도회관 강진에 바치기 위해서 바람을 기다리는 장소(待風處)인 別道浦(別刀浦=禾北浦)로 향하던 중 조난당했다.⁵⁴⁾

〈사례 2〉

1698년 11월 29일, 제주의 사공 寺奴 金以斤 등 40명은 押領色吏 6명과 함께 제주 冬至方物, 陳賀箋文, 三邑軍器會計成冊, 定配罪人徒流案, 11月朔所封柑子 초운·2운·3운, 제주판관 진상 柑子, 대정현감 진상 柑子 등을 싣고 제주에서 출발했다. 이 배에는 위의 제주사람 40명 이외에 제주 陸居奴婢收貢色吏 2명, 서울에 사는 商賈 3명, 남원에 사는 제주목사 막하의 군관 1명이 승선했었다.⁵⁵⁾

〈사례 3〉

1699년(숙종 25) 10월 29일, 제주목 소속 사공 私奴 李守日 등 34명은 柑子 進上 押領使 3명과 함께 진상용 감자를 싣고 제주를 출발하였다. 이 배에는 제주의 救荒貿易色吏 6명도 곡식을 입수하기 위한 본전으로 涼臺, 미역(甘藷), 전복 등을 싣고 같이 탔다.⁵⁶⁾

〈사례 4〉

1704년(숙종 30) 1월 4일, 사공 私奴 尙俊 등 21명은 제주 唐袖子 진상 및 祭物使 13명을 싣고 추자도를 거쳐 해남으로 향하였다. 이 배에는 당유자, 순영에 바치는 箋文, 그리고 厩馬所 및 禮房所에 바치는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한 본전으로 미역, 軍木, 전복, 木梳, 帽子, 鹿皮, 양대 등을 싣고 있었다.⁵⁷⁾

〈사례 5〉

1704년(숙종 30) 12월 12일, 사공 寺奴 李仁奉 등 23명은 진상 색리 13명과 함께 제주 목사·판관·대정·정의현감의 연례진상인 감귤, 그리고 厩馬所에서 사용되는 각종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한 본전으로 감곽, 전복을 싣고 出船하였다. 이 배에는 제주목 막하

54) 『漂人領來曆錄』 第1冊, 壬辰(1652) 6月 13日條

55) 『漂人領來曆錄』 第6冊, 己卯(1699) 6月 初3日條

56) 『漂人領來曆錄』 第7冊, 庚辰(1700) 7月 21日條

57) 『漂人領來曆錄』 第9冊, 甲申(1704) 7月 初3日條

소속인 忠翊衛 李壽萬이 휴가를 얻어 서울의 집에 가기 위해서 같이 타고 있었다.⁵⁸⁾

《사례 6》

1707년(숙종 33) 7월, 사공 寺奴 金月善 등 21명은 제주 7月朔所封進上秋餼 및公私 貿穀을 위해 전복 3000束 등을 싣고 제주에서 출발하다가, 8월 초 2일, 도회관 강진에 도착해서 진상물을 바쳤다. 그 다음에 그들은 萬頃에 가서 감곽을租 75석과 바꿨다. 그리고 나서 이 배는 海南으로 향하던 중 狂風을 만나서 遭難하였다. 물에 빠진 짐을 들어 올린 후 海南현에서 곡식을 급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싣고 11월 29일에 제주를 향하였다.⁵⁹⁾

《사례 7》

1707년(숙종 33) 9월 27일, 사공 寺奴 金以云 등 17명은 進上物件監色, 馬夫 등 7명과 함께 제주의 10月令 유자와 대정현감의 체임진상인 말 2필을 싣어,⁶⁰⁾ 제주에서 출발하였다. 10월, 도회관 海南에 도착하고 진상물건감색과 마부, 모두 7명은 下船하였고 육로로 서울에 올라갔다. 나머지 19명은 배로 扶安沙津浦에 가서, 거기에서 감곽과 마필을 正租 300석으로 換貿한 후, 陸居奴婢 收貢米 15석을 또 배에 싣었다. 그 후 서울에 갔던 감색 등이 돌아와서 함께 배를 타고 海南에 가서 경상도 善山의 奴 徐沔伊과 婢 點花 등 남매(대정현감의 노비)를 동승시켰다. 11월 10일, 海南에서 출발한 그들은 甫吉島 앞 바다에서 바람을 기다리고 12월 12일, 제주를 향해서 출발하다가 조난하였다. 왕로의 乘船者는 25명, 복로는 28명이다.⁶¹⁾

《사례 8》

1720년(경종 원년) 11월 14일, 사공 寺奴 高戒輝 등 10명은 제주목 색리 3명과 진상용 감자와 靑橘, 그리고 미역·양대 등을 싣어서 제주에서 출발하였다.⁶²⁾ 이 중 미역과 양대는 「羅州官移轉穀 代納用」, 즉 흉년 시에 나주에서 제주에 보내준 곡식의 대가로 납부하는 것이었다.

《사례 9》

1723년(경종 3) 4월 7일, 사공 私奴 康次萬 등 10명은 進上押領使 2명과 진상용 리

58) 『漂人領來曆錄』 第9冊, 乙酉(1705) 閏4月 14日條.

59) 『漂人領來曆錄』 第9冊, 戊子(1708) 閏3月 22日條.

60) 대정, 정의현감이 遞任할 때는 말 2필 이외에도 馬裝 등을 임기기간이 6분의 5가 지난 후에 封進하게 되어 있었다.(田川孝三, 앞의 책, 116쪽)

61) 『漂人領來曆錄』 第9冊, 戊子(1708) 4月 初7日條.

62) 『漂人領來曆錄』 第13冊, 辛丑(1721) 5月 17日條.

鯨·薰古 등을 신고 도회관 강진을 향하였다.⁶³⁾

《사례 10》

1724년(경종 4) 2월 14일, 사공 寺奴 李春建 등 24명은 進上色吏 3명, 그 從人 4명과 제주 正朝方物, 筒箇(가죽으로 만든 弓筒)와 結弓獐皮, 2月令 청갈과 槌鯨, 正朝陳賀箋文, 군기로 사용하는 화약을 구입하기 위한 본전을 신고 제주를 출발해서 해남을 향하였다.⁶⁴⁾

《사례 11》

1744년(영조 20) 9월 24일, 제주 사공 寺奴 楊吉萬 등 11명은 진상·전문 押領使 3명과 함께 제주목사 金潤의 到界進上인 白蠟 2 楨와 箋文, 馬牌를 신고 제주 朝天浦에서 출발하였다.⁶⁵⁾ 마패는 김윤이 서울에서 제주에 내려올 때 각 역에서 驛馬를 지급받기 위해 사용한 것인데 이 마패가 제주에 도착 후, 중앙에 반납된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2) 진상선의 구성

위의 사례에서 진상물을 수송한 배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앞에 든 사례에서 乘船者의 내역을 정리한 것이 <표4>이다.

배의 운항을 관장하는 자를 沙工과 格軍이라고 하여 합쳐서 沙格이라고 불린다. 사공은 이른바 선장으로 舵工이라고도 하였다. 사공은 「船上大將」이라고 불렸고, 배 안의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⁶⁶⁾ 한편 격군은 櫓軍이라고도 불렸고 櫓를 젓고 돛(帆)을 올리고 배의 운항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제주에서는 官船을 운항시키기 위해서 舵工을 두었다. 다음은 『탐라지』의 기사이다.

63) 『漂人領來曆錄』 第13冊, 癸卯(1723) 10月 11日條.

64) 『漂人領來曆錄』 第14冊, 甲辰(1724) 4月 19日條.

65) 『漂人領來曆錄』 第20冊, 乙丑(1745) 5月 29日條. 이 자료에는 목사의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耽羅紀年』 卷之3, 英祖 20年條에 의해 확인하였다. 到界進上이란 지방관이 그 도입 보고와 그 敍任 謝恩을 겸하여 禮狀을 보낼 때 사은 예물로 봉진한 것이다 (田川孝三, 앞의 책, 115 쪽). 제주목사 착임 때에는 白蠟 24편이 봉진되었다.

66) 沙工曰諺稱船上大將 乃沙工也, 謂其每事指揮之都在也. (張漢喆 『漂海錄』 12月 26日條)

〈표 4〉 진상선의 乘船者 내역

사 례	사공의 직역 및 성명	格軍 人數	진상 관련 관리(인원수)	기타 乘船者 (인원수)	합계
사례1	寺奴石天	10	확인 못함.	없음	11
사례2	寺奴金以斤	39	濟州冬至方物上納色吏(1), 濟州十一月朔所封柑子初運二三運進上色吏(3), 濟州判官進上柑子押領色吏(1), 大靜縣監進上柑子進上色吏(1)	濟州案付泰仁·羅州·靈巖·康津·海南·長興·興陽·光陽等八邑 陸居奴婢收貢色吏(2), 南原居 濟州牧使帶率軍官(1), 京居 商賈(3)	48
사례3	寺奴李守日	33	濟州進上柑子押領使(3)	濟州救荒貿易色吏(6), 京居 商人(1), 長興 商人(1)	44
사례4	私奴尙俊	20	濟州唐柚子進上及祭物使(13)	靈巖居 幼學(3)	39
사례5	寺奴李仁奉	22	濟州牧使 및 判官 大靜旌義進上色吏(13)	濟州牧使 帶來軍官(1)	37
사례6	寺奴金月善	21	없음	없음	21
사례7	寺奴金以云	24	濟州進上物件監色·馬夫(7)	歸路에서 大靜縣監의 奴婢(2)	28
사례8	寺奴高戒輝	9	濟州牧色吏·監色(3)	없음	13
사례9	私奴康次萬	9	濟州進上押領使(2)	濟州藥材質來使(1), 濟州居 商人(2), 濟州 譯學과 從人(3), 京麻浦居幼學(1), 黃海道安岳居 幼學과 그 奴(3), 京居 濟州檢律奴子(1), 羅州居 私商(1), 忠清大興居 濟州牧使帶率軍官 奴子(1)	25
사례10	寺奴李春建	21	濟州正朔方物筒箇, 結弓鞞皮進上陪持色吏(1), 濟州二月令青橘槌引艘進上陪持色吏(1), 濟州正朔陳賀箋文陪持色吏(1), 三件進上陪從人(4)	濟州居私商(12), 濟州軍器火藥貿易使(1), 京居 禁府書吏(2), 濟州定配罪人の 자식과 그 奴(2), 全義居 幼學과 그 奴(2), 京居 閑良(1), 康津居 禁府書吏(1), 京居 私商(2), 臨陂居 私商(1), 靈巖居 私商(1), 舒川居 濟州判官奴子(1), 扶餘居 私奴(1)	60
사례11	寺奴楊吉萬	10	濟州進上押領(1), 箋文押領(1), 領使(1)	없음	14

배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세를 거두는데, 진상공물을 싣고 운반할 때에는 官船뿐이 아니라 私船도 輪番으로 지명하고 격군에게 정해진 급여를 주었기 때문에 사선이라고 해도 실체는 관선과 다름이 없다. 관선으로서는 輕快船이 1 척 있을 뿐, 말을 실을 때에는 本道 沿海의 배들을 별도로 보내서 필요한 배의 수를 충족시킨다.⁶⁷⁾

66) 沙江曰 蓍稱船上大將 乃沙江也. 謂其每事指揮之都在也. (張漢喆 『漂海錄』 12月 26日條)

67) 隨船大小收稅若干 進上貢物載運時 輪次起送名 雖私船實如官船 故定給格軍 官船只有輕快船一隻 載馬時 則本道別送沿海船隻 以足容載之數 (『耽羅誌』 濟州 工匠 舵工條)

관에서는 배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收稅하고 진상공물(=진상물)을 수송할 때에는 운번으로 일을 담당시켰다. 개인이 소유한 私船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태는 官船이다. 그 때문에 격군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제주에는 官船으로 輕快船이 1척이 있을 뿐이고 말을 운반할 때에는 전라도 연해의 배를 징발하여 일을 맡겼던 것이다. 여기에서도 舵工이라는 定役戶, 또는 官船만으로는 공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民戶에게 사실상 과역이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진상선이 항해할 때, 押領監色이나 船格들은 寄港地에서 음식이나 숙박 등 접대를 받았는데 이러한 접대비용은 기항지에 거주하는 민호가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⁶⁸⁾ 그런 의미에서 진상제도는 물건을 조달하는 곳뿐 아니라 押領官 일행이 통과하는 연해 여러 읍에도 폐해를 가져왔다.

〈표4〉에 의하면 사격의 인원은 일정하지 않고 10~11명(4척), 18~23명(5척), 34~40명(2척)이 된다. 사공의 직역은 거의 대부분이 寺奴이다. 이들 寺奴인 사공들이 앞에서 본 舵工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사공이 私奴일 경우 그 上典이 진상물 수송의 役을 지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즉 그들은 私人이면서 관에서 진상물을 맡고 수송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漕運 제도의 붕괴에 따라 세곡수송이 京江船을 비롯한 민간 선상에게 請負되었던 것처럼 적어도 18세기에는 진상물 수송도 민간의 선박에 청부되었던 것이다.

배의 운항 책임은 사공에게 있었지만 진상물 수송의 책임은 관에서 파견한 관리에게 있었다. 진상물 봉진에 대해서 『탐라지』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무릇 진상물을 陪持할 때 押領이 있다. 令史들이 공물 운반을 꺼리고 싫어한다. 그래서 임무를 띠고 서울에 올라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기도 한다. 그 때 모두 따르는 從人이 있다.⁶⁹⁾

즉 진상물을 가지고 서울에 갈 때 그 責任官으로 押領이 있었고, 이들이 從人을 데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續大典』에는 田稅漕運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68) 1795년, 호남 암행어사 鄭晩錫은 書啓別單으로 제주를 왕래하는 배가 바람을 기다리는 곳 중 하나인 所安島에서 진상물 수송 監色 및 船格에 대한 접대의 부담이 모두 島民에게 주는 폐해를 고치도록 上申했다. (『正祖實錄』 卷42, 19年 5月 壬申條)

69) 凡進上陪持有押領, 令史憚壓貢物, 則有使以所任上京者, 皆有從人. (『耽羅誌』 濟州 貢獻條)

押領差使員으로 50척 이상 사고 없이 무사히 到泊시키면 論賞한다. 아직 資窮(정3품 당상관으로 올라가기 직전의 품계인 東班의 通訓大夫와 西班의 禦侮將軍을 의미함. 階窮과 같다.)이 아니면 準職(堂下官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관직으로 정3품 堂下 관직을 의미하기도 하고, 품계에 걸 맞는 관직을 의미하기도 함.)으로 하여, 資窮이면 加資(정3품)한다. 3척 이상 致敗한 자는 논죄한다【3척 이상은 杖 80, 6척 이상은 杖 80 後資, 8 척 이상은 罷黜, 15척 이상은 海運判官과 함께 罷黜한다. 押領差使員 및 海運判官 등이 水路를 厭憚하여 陸路로 운송하다가 100척 이상 虧缺한 자는 罷黜한다】.⁷⁰⁾

위는 전세 漕運에 관한 규칙이지만, 진상물의 船運에도 이와 비슷한 규칙이 적용되었고 진상물 수송이 엄격한 官의 관리 하에 행해졌음을 가늠할 수 있다. 어떻든 이러한 押領官들이 진상선을 탄 사실은 <사례 1>과 <사례 6>을 제외한 9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명칭은 方物上納色吏, 進上押領使, 進上色吏, 押領色吏, 進上物件監色, 進上陪持色吏 또는 進上押領, 領使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는 19세기 말에 작성된 진상물 領護人姓名成冊 3冊이 소장되어 있다. 세 가지 문서의 형식은 같으며, 『司僕寺納紅鞍 數領護人姓名成冊』⁷¹⁾은 고종 15년(1878) 4월에 제주에서 司僕寺에 바친 騎鞍 등의 馱數와 領護人, 즉 押領을 맡은 사람들의 성명을 적은 문서이고, 『誕日方物進上馱數領護人姓名成冊』⁷²⁾은 고종 12년(1875년) 6월에 誕日方物로 제주목에서 結弓獐皮 30승을 바쳤을 때의 기록이다.

『本州所封二月令朔膳進上馱數領護人姓名成冊』⁷³⁾은 고종 15년(1878) 1월에 濟州牧에서 朔膳으로 진상한 물품의 馱數와 그것을 호송할 사람들의 성명을 적은 문서이다. 우선 표지에는 「光緒四年正月日 本州所封二月令朔膳進上馱數領護人姓名成冊」이라고 되어 있다. 제 1~2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光緒四年正月日 本州所封二月令朔膳進上馱數領護人姓名成冊

70) 押領差使員, 五十隻以上不敗到泊論賞. 未資窮則準職. 資窮則加資. 三隻以上致敗者論罪. 三隻以上 杖八十, 六隻以上杖八十 後資, 八隻以上罷黜, 十五隻以上并海運判官罷黜. 押領差使員 及 海運判官等厭憚水路 自陸路來以致 虧缺百石以上者罷黜. (『續大典』卷之2, 漕轉條)

71) 서울대 규장각 소장. 奎 17104.

72) 서울대 규장각 소장. 奎 17103.

73) 서울대 규장각 소장. 奎 16780.

濟州牧

糙麩一百五十八貼

條麩一百五十八貼

引麩三十二注之

青橘九百九十一箇

領去監官 高元杓

從人 宋辰國

押領 高官桓

令史 金連式

從人 康平老

已上 伍名

分入關二十一作四駄半

進上物은 糙麩·條麩·引麩·青橘 등인데, 이를 4 駄半으로 만들어 領去監官 이하 5명이 호송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제 3면에는 「濟州牧 白」이라고 제주목사의 手決이 있다.⁷⁴⁾

위의 자료는 고종 때 문서이지만, 그 이전부터 진상물을 서울에 상납할 때에는 제주목사가 이러한 領議人姓名成冊을 만들어 진상물과 함께 압령 책임관들의 명단을 중앙에 올렸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문서들은 진상물 수송이 목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엿보게 해준다.

그런데 <사례 10>의 배에는 濟州正朝方物筒箇結弓獐皮進上陪特色吏, 濟州二月令青橘糙引麩進上陪特色吏, 濟州正朝陳賀箋文陪特色吏 등 각 1명의 압령관과 그 종인 4 명이 같이 뒀다. 箋文은 나라의 慶事·凶事 등이 있을 때, 臣僚가 왕비·대비 등에게 상주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正朝 하례의 글을 제주목사가 바친 문서이다.⁷⁵⁾ 이 전문에도 별도로 담당 압령관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이 문서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진상물에는 膳狀 또는 進上單子라고 불리는 품목을 적은 목록을 貼付하였는데,⁷⁶⁾ 이것은 목사가 진상물을 監封할 때 작성하였다. <사례 11>은 제주목사 金潤의 到界進上의 예인데 이 배에 실린 전문은 敍任에 대한 禮狀으로 앞에서 말한 전문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진상물뿐만 아니라 전문에도 押領官이 수반되

74) 당시 제주목사는 白樂淵이었다. (『耽羅紀年』 卷之4, 高宗 14年~16年條).

75) 崔承熙, 1989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知識產業社, 143~146쪽.

76) 田川孝三, 앞의 책, 95~96쪽. 이 膳狀은 司饗院에 상납되었다고 한다. 최승희는 이것을 進上單子라고 부르고 있다.(崔承熙, 앞의 책, 173~174쪽)

어 압령제도가 규정대로 시행되었고 이 제도가 고종 때까지 계속 유지된 것이다.

3) 진상물 수송에 수반된 공무와 교역

한편 進上船에 압령 담당 관리, 사공과 격군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同船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형태는 앞의 11 사례 중 7개 사례에서 확인된다.

우선 진상 이외의 공무 수행을 위해서 관리가 승선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제주목 陸居奴婢收貢色吏(사례 2), 救荒貿易色吏(사례 3), 제주 藥材貿來使(사례 9), 제주 軍器火藥貿易使·서울 의금부 書吏(사례 10) 등이 그것이다.

제주에는 17세기 중반에 관노비, 內需司 노비, 각사 노비, 大君 노비, 校奴婢 등이 14,918 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⁷⁷⁾ 18세기 말에는 합계 9,211 명의 寺奴가 기록되어 있다.⁷⁸⁾ 제주목에 딸린 寺奴 중에는 육지에 거주하는 자도 많았을 것인데, 이와 같은 육지노비에 대한 身貢 징수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 陸居奴婢收貢色吏였다.⁷⁹⁾ 《사례 2》에 나타난 陸居奴婢收貢色吏들의 임무는 收貢文書와 點案成冊을 가지고 泰仁 등 여덟 개 읍에 거주하는 노비에게서 수공하는 것이었다.⁸⁰⁾

救荒貿易色吏는 이름 그대로 흉년 등으로 제주도 내의 식량이 부족하였을 때에 제주의 土産으로 육지의 곡식을 구입하는 일을 맡은 관리로서 《사례 3》에서는 본전으로 양대, 미역(甘藷), 전복을 싣고 있었다. 또한 軍器火藥貿易使는 제주목에서 사용하는 군기와 화약을 육지에서 구입해오는 관리이다.

서울 의금부 서리는 제주 旌義縣에 定配되었던 죄인 李壽民을 拿來하기 위하여 제주에 와 있었다. 그러나 다른 胥吏가 이수민을 仍配, 즉 정배를 續行함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의 직무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수민은 각 고을 수령을 역임한 후, 경상·전라·충청 삼도 수군을 통솔하는 統制使까지 역임한 인물이다.⁸¹⁾ 앞의 의

77) 『耽羅誌』 濟州 奴婢條.

78) 『濟州大靜旌義邑誌』 濟州 奴婢條.

79) 官奴婢의 身貢은 주로 木綿 등 布로 바쳤다. 상세한 것은 平木實, 1982 『朝鮮後期 奴婢制 研究』 知識産業社, 第2章 참조.

80) 국가에서 노비에게서 징수하는 身貢을 기록한 장부를 收貢案이라고 불렀다. 收貢正案은 20년에 한 번 작성되었고 3년마다 개정된 것을 收貢續案이라고 한다.

81) 1721년(경종 元) 11월, 이수민은 洪禹傳에게 탄핵 당해서 統制使의 직을 잃은 후, 사헌부에서 탄핵을 받아서 이듬해 8월에 죄인으로 의금부에서 鞠廳에 이송되고, 경종 3년 5월, 減死되어 絶島定配의 명령을 받아 같은 해 6월에 정의에 정배되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肅宗實錄』 卷22, 16年 7月 乙未條: 卷46, 34年 3月 甲子條: 卷59, 43年 1月 乙亥條: 『景宗實錄』 卷5, 元年 11月 庚戌條: 卷9, 2年 8月 辛未條: 卷12, 3年 5月 辛卯條 등을 참조.

금부 서리는 항해의 전년 10월에 제주에 왔지만 이수민의 잉배 결정을 듣고 이 배에 승선하여 서울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수민의 아들 槩도 아버지를 따라 제주에 들어왔지만 의금부 서리와 같은 배를 타고 서울에 올라갔다.

《사례 8》의 배는 羅州官에 대한 移轉穀代納 용 미역과 양대를 싣고 있다. 나주에는 濟民倉이 설치되었다. 여기에서 제주도에 곡식을 보내고 그 대가로 제주도에서 미역나 양대를 상납 받았다. 이러한 각종 공무를 띤 사람들이 진상선이 제주를 떠나는 기회를 이용하여 동승한 것이다.

다음으로 진상선 승무원이 公交易을 행한 네 가지 사례가 있다.(사례4·5·9·10) 그 내용을 보면 雇馬所나 禮房所 등 제주목 안의 관아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얻기 위한 교역이 이루어진 두 가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때 본전으로 실린 것은 미역, 軍木, 전복, 木梳, 帽子, 鹿皮, 양대 등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 9》의 藥材貿來, 《사례 10》의 軍器·火藥貿易使도 그 임무는 공교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본전은 모두 제주 특산품으로 육지에서 약재나 군기·화약을 구입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물건이 사용되었다. 조선에서는 1687년에 화폐가 본격적으로 주조되기 시작한 이후 전국에 금속화폐가 보급되었다고 한다.⁸²⁾ 그러나 금속화폐가 교역에 이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18세기 중반까지의 제주에서는 布貨에 의한 교역 혹은 특산품과의 물물교환형식의 교역이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뜻밖이지만 진상선에는 많은 민간인도 동승하였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상인이다. 사례에서는 그 출신지로 濟州, 長興, 羅州, 臨陂, 靈巖, 서울 등 여섯 군대가 확인된다. 이들은 스스로를 商賈, 興利, 私商 등이라고 칭하고 있다. 각지의 상인들이 진상선을 타고 전라도 연해 여러 고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무대로 활동했던 것이다.

《사례 6》 《사례 7》의 배 2척은 모두 진상물을 都會官에 바친 후에 다른 지역 《사례 6》에서는 萬頃, 《사례 7》에서는 扶安 沙津浦)을 경유했는데, 경유지에서 미역이나 말을 正租 등 곡식과 교환한 다음에 제주로 돌아가고 있다. 다른 사례에서는 교역한 물건의 용도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 것에 반해서 이 두 사례에서는 그러한 기술이 전혀 보이지 않다. 이는 사공 및 격군에 의한 私交易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진상물 수송에 수반된 公私 교역이 제주와 육지와의 상품유통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겠다.

82) 方基中, 1997 「금속화폐의 보급과 조세금납화」 『한국사33 조선후기의 경제』 國史編纂委員會, 특히 394~416 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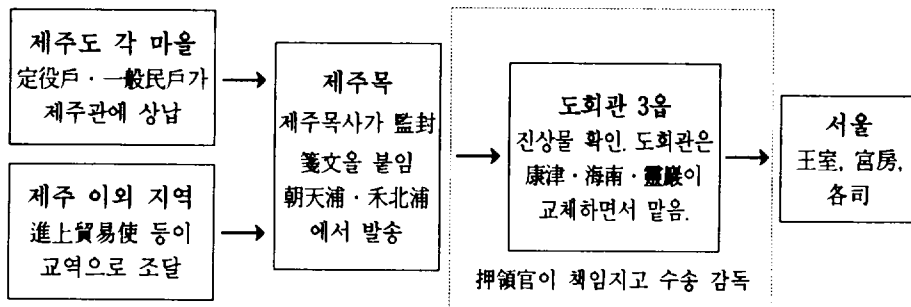
제주에 거주하는 자신의 노비에게서 收貢하기 위해, 즉 推奴를 위해서 육지에 갔다가 다시 제주에 돌아온 사람들이 진상선을 타는 사례도 3개 있다.⁸³⁾ 《사례 4》는 영암의 幼學 2명이 노 3명을 데리고, 《사례 9》는 황해도 安岳에서 유학 2명이 노 1명을 데리고, 《사례 10》에서는 雋義의 유학이 노 1명을 데리고 제주에 들어가 수공한 후 육지에 돌아갈 때 진상선을 탔다. 이 밖에도 제주목 配下의 군관, 대정현감의 노비, 제주 거주의 譯學과 그 從人, 제주목 관하의 군관의 노, 서울 거주의 閑良, 제주판관의 노 등,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사적인 용건 때문에 진상선을 탄 것이다.

4) 진상물의 수송경로

원래 진상은 각도 관찰사 및 각도 감사, 각 병마·수군 절제사 등에게 부과된 - 물론 명목상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에게 관할지의 특산품을 상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것이다. 즉 제주에서 도회관을 경유해서 육지로 巡營까지 운반한 다음에 전라도 감사가 중앙에 수송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진상물은 제주목 관할의 압령관이 도회관을 경유해서 그대로 서울까지 호송하였다. 그 실제 사례로 《사례 7》가 있는데, 여기서 도회관인 해남에서 下船한 감색과 마부 등 7명이 육지로 진상물을 운반해 서울로 올라간 것이 확인된다. 이밖에도 제주의 진상선이 海路로 上京한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진상물이 제주에서 조달되어 서울의 왕실·궁방·각사 등에 상납되는 과정을 정리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제주 진상물의 수송경로



83) 도망한 노비를 수색해서 데리고 가는 일도 推奴라고 하였지만, 확인되는 사례에서의 추노는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 생산자인 정역호 및 일반민호가 제주목사에게 각 진상물을 상납한다. 제주목사는 진상물의 내역을 확인하고 封印한 뒤 품목과 수량을 적은 進上單子를 작성한다. 둘째, 제주관이 관선 또는 지도선을 고용해서 進上船을 마련하고 조천포 또는 화북포에서 육지의 도회관(강진·영암·해남)을 향해 출발시킨다. 셋째, 도회관에서 진상물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사 후, 진상물은 그대로 제주에서 출발한 진상선으로 서울까지 수송된다. 넷째, 서울에 도착한 각 물건은 소비자인 각 궁궐·각사에 배분된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제주로 돌아가는 귀로에 오른 진상선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679년(숙종 5) 11월 28일, 제주사람 35명 등 승무원 42명을 실은 배가 서울에서 제주로 향하였다. 승무원 중 2명은 전년 9월 9일의 진상물 수송을 위해 서울에 와 있던 押領使이고, 17명은 그 배의 격군이었던 바 이 배가 제주에서 도회관을 경유해 서울까지 진상물을 수송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⁴⁾ 또한 이 배에는 전년 8월 9일 진상선의 격군 1명, 전년 8월경에 旌義에서 공물을 押領해온 자 3명, 그리고 大靜에서 各司奴婢收貢案을 중앙에 상납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 있던 사람 2명도 같이 타고 있었다.

승무원 중에는 이 밖에도 서울에 사는 上典에게 納貢하러 왔던 제주의 私奴도 있었다. 通津이나 牙山 등 각지에 거주하는 상전에 대한 납공을 위해 육지에 와 있던 私奴가 모두 4명이 된다. 이들은 제주와의 사이에서 배가 왕래하던 수도 서울에서 제주 행 선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충청도 牙山 등 비교적 서울에 가까운 곳에서 제주에 가기 위해서는 육로로 전라도 남쪽 연해까지 가서 제주에 가는 배를 찾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진상물을 운반하기 위해 서울·제주간을 왕래하는 제주 배를 기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이것은 같은 배에 경상도 尙州에서 收貢을 위해 제주에 거주하는 班奴에게 간 私奴 2명이 동승한 점에서도 추측된다. 또한 上典인 정의현감에게 書狀을 전하기 위해 같은 배를 탄 경상도 安東에 거주하는 私奴는 강진에서 승선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당시 사람들이 육로와 해로의 거리를 감안해서 효율적인 여정을 생각했던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 배에는 觀光⁸⁵⁾, 즉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에 왔던 전라도 강진

84) 『漂人領來臚錄』 第3冊, 庚申(1680) 2月 初9日條.

85) 중앙에 올라가서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에서의 과거는 바로 殿試를 말하는 것으로 왕에게 배알하고 그 빛나는 德을 보는 것으로 과거 응시라는 뜻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된다.

의 유학 등 3명, 또 內禁衛에 딸린 사람도 1명 포함되어 있었다. 私人, 즉 민간인이 자유롭게 승선하였다는 점에서 歸路의 진상선과 往路의 진상선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

도회관에서 진상물을 검사한 후 제주 압령관이 육로 아니면 해로로 서울까지 수송을 맡았다. 이 과정에 전라도 감사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상선에는 往路·歸路 모두 진상과는 직접 관련 없는 관리나 私人들이 同船하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제주도의 진상물 조달과 수송의 실상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진상제도가 실시된 과정은 각 시기, 각 지역마다 다양하였다. 제주 이외 지역과의 상세한 비교검토, 진상제가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 조선왕조의 국가재정과의 관련 등 남은 문제는 많지만, 이에 대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진상물은 원칙적으로 제주목이 정한 定役戶에 의해 조달되었다. 그러나 중앙에 바쳐야 할 진상물은 많고 정역호가 생산, 조달할 수 있는 물건 수량에는 한계가 있었다. 진상 분량을 채우지 못 했을 경우에 그 부담은 一般民戶에게 전가되었고, 또 제주도 밖에서 교역을 통해서 조달되기도 했다. 지방 貪吏들은 진상을 사복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고 정역호 그리고 일반민호에 대해서도 규정 수효의 몇 배나 되는 물건의 상납을 강요했다. 진상제도는 원래 국왕, 왕실에 대한 禮로 臣民들이 토지의 특산물을 奉納한 것이 제도화된 것이지만 이 제도 자체가 커다란 사회적 폐해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정역호나 일반민호에 의해서 조달된 진상용 물자들은 제주목에서 도회관을 거쳐 목사의 책임 하에 중앙궁궐, 각사에 수송되었다. 제주도가 행정상으로는 전라도에 포함되었지만 진상제도에 있어서는 독립단위였다는 사실은, 조선왕조의 지방지배에 있어서의 제주도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1672(현종 13)에 영의정 許積이 '제주는 屬國과 마찬가지로 諸侯의 朝貢하는 법처럼 해운 진상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⁸⁶⁾

86) 『顯宗改修實錄』 卷25, 13年 2月 戊子條.

제주도가 섬인 만큼 제주목에서 서울에 진상물을 수송할 때에는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강진·해남·영암 등 도회관까지 船運한 다음에 육로로 서울까지 압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제주 조천포나 화북포에서 출항한 진상선은 도회관을 거쳐 직접 서울까지 올라갔다.

진상선에는 제주목 소속의 沙格 이외에 물자 호송의 임무를 맡은 압령관이 타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압령관제도는 조선후기 이래 19세기 말까지 유지되었다. 압령관, 사격뿐 아니라 다양한 공무를 띤 관리나 行商 등 민간인들이 진상선을 탔다. 진상물 수송과 여러 가지 공무, 민간 상인들에 의한 교역이 행해진 것도 제주의 진상물 수송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진상물을 서울까지 수송하며 경유하는 각 고을에서 압령관 일행에 대한 대접은 沿路 각 읍민들의 부담이 되었고 이것이 진상제도가 조선사회에 미친 또 하나의 폐해가 되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17세기에는 전세수송에 있어서 官船漕運制가 무너지고 私船賃運制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진상물 수송에 있어서도 발생했다. 진상선에는 진상 이외의 공무를 띤 관리, 그리고 민간인인 행상들도 많이 同乘했다. 즉 진상물 수송에 수반하여 여러 가지 공무나 私交易 등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제주의 진상물 수송은 제주와 육지 사이의 상품유통 발전에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겠다.

조선 초기에 진상물의 조달, 수송에 대해서는 일반민호에 부담을 끼치지 않도록 제도를 정하였는데도 그 원칙은 유명무실화되었다. 제주도민들은 항상 貪慾한 관리들의 가혹한 징수, 징용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것이다. 19세기 말에 제주도 내에서 대규모 民亂이 일어났는데 진상을 빙자한 탐관들의 가렴주구는 그 요인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